

1. 제안이유

농업·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·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「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(법률 제17100호, 2020. 3. 24. 공포, 2021. 3. 25. 시행)됨에 따라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실태조사의 범위 등(안 제2조)

나. 안전·위생교육(안 제3조)

다. 응시원서 제출, 치유농업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(안 제4조·제5조)

라.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, 지정 취소 등(안 제6조·제7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입법예고(2021. 1. 29. ~ 2. 18.) 예정

2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

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실태조사의 범위 등) 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조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에 대한 실태조사(이하 “실태조사”라 한다)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치유농업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, 단체 등의 치유농업시설
2. 국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활용하는 치유농업시설

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치유농업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시설 일반현황
2. 매출 등 경영활동 현황
3. 치유농업 관련 종사자 현황
4. 치유농업서비스 유형 등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
5. 치유농업시설 이용자 현황
6. 그 밖에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실태조사는 현지조사, 문헌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.

④ 실태조사는 매 5년마다 실시하되,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할 수 있다.

⑤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농촌진흥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할 수 있다.

⑥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.

제3조(안전·위생교육)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안전·위생교육은 치유농업사업을 영위하는 법인, 단체 등의 치유농업시설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다. 단, 부득이한 사유로 운영자가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가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다.

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는 제1항의 안전·위생교육을 연 4시간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응급처치 요령

2. 소방·안전

3. 식품위생

4. 공중위생

③ 시·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안전·위생교육을 한 후 그 교육 기록

을 2년 이상 보관·관리하여야 한다.

④ 시·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안전·위생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·위생교육 수료증을 주어야 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 및 위생교육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4조(응시원서의 제출) 영 제6조제6항에 따라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「농촌진흥법」 제33조에 따른 농업기술실용화재단(이하 “실용화재단”이라 한다)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5조(치유농업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) ① 실용화재단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최종합격 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 최종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

③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른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경우 일련번호를 부여하고, 별지 제4호서식의 치유농업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그 발급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.

④ 치유농업사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치유농업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고 자격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.

⑤ 농촌진흥청장은 제4항에 따라 자격증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치유농업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.

제6조(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등)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사 양성기관(이하 “양성기관”이라 한다)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6호서식의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양성기관 운영계획서(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포함)
2. 운영경비 조달계획서
3. 교수요원의 확보현황
4. 강의실, 실습장 등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및 확보현황

②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·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, 별지 제8호서식의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
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농촌진흥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

④ 시·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농촌진흥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시·도지사로부터 통지받은 사실을 농촌진흥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

하여야 한다.

⑤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양성기관이 운영하여야 하는 치유농업사 양성과정의 교육 내용은 별표와 같다.

⑥ 양성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치유농업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치유농업사 양성과정 교육이수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성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.

제7조(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등) ①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·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양성기관이 법 제1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② 농촌진흥청장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농촌진흥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

③ 시·도지사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농촌진흥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시·도지사로부터 통지받은 사실을 농촌진흥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치유농업사 양성과정의 교육 내용(제6조제5항 관련)

교육분야		교과목	교육시간		
			계	이론	실습
1급 치유농업사 양성과정	치유농업 대상 이해	정신건강·재활	12	6	6
		치유농업 참여자 중점관리	12	6	6
	치유농업 활동소재 및 환경관리	치유농업 활동소재 관리	8	4	4
		치유농업 사업장 환경관리	8	4	4
	치유농업 프로그램 및 관리	치유농업 프로그램 관리 및 운영 심화	54	18	36
	치유농업 경영관리	치유농업 사업 관리	15	6	9
		치유농업 종사인력 역량 강화	15	6	9
	소계		124	50	74
2급 치유농업사 양성과정	치유농업 대상 이해	치유농업개론	8	8	-
		치유농업 대상 진단	18	18	-
	치유농업 활동소재 및 환경관리	치유농업 활동소재 관리	24	12	12
		치유농업 사업장 환경관리	18	10	8
	치유농업 프로그램 및 관리	치유농업 프로그램 기획·개발	24	12	12
		치유농업 프로그램 실행	16	8	8
		치유농업 프로그램 평가	16	8	8
	선택과목 (교과목당 6 시간)	[식물] 원예학, 재배학, 작물생리학, 작물보호학, 토양학 [동물] 축산학개론, 동물생리학, 동물영 양학, 동물질병학, 동물관리학, 곤충학 [농업공학] 농기계학, 농작업안전관리 [보건의료] 보건학개론, 보완대체의학, 예방의학 [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] 교육학개론, 교수설계론 [심리상담] 심리학개론, 직업 및 진로상담	18	18	-
	소계		142	94	48

제 호

안전 · 위생교육 수료증

주 소 :

성 명 :

생 년 월 일 : (성 별 :)

치유농업시설명 :

교육과정(과목) :

위 사람은 상기와 같이 안전 · 위생교육을 이수하였으므로 「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에 따라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.

년 월 일

특별시장 · 광역
시장 · 특별자치
시장 · 도지사 ·
특별자치도지사

직인

제 회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응시원서

※ 아래 각 항목은 뒤쪽의 응시원서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(앞쪽)

①응시번호	②응시등급		[] 1급 [] 2급	
응시자	③성 명	(한자)		
	④주민등록번호			
	⑤주 소			
	⑥연 락 처	(자택) (휴대전화번호)		
	⑦최종 학력	학교명	전공	⑧직 업
		기간	학위등록번호	
⑨ 치유농업사 양성기관	명칭		이수증번호	
	기간		총 교육시 간	
⑪ 1차 시험 면제 여부 및 사유	[] 해당없음 [] 전 회 시험의 1차 시험 합격자			
⑫ 「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치유농 업사 자격시험에 응시를 신청합니다.				
년 월 일 응시인 (서명 또는 인)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장(이사장) 귀하				
※ 제출 서류 ⑬ 치유농업사 양성과정 교육이수 증명서 1부. ⑭ 자격기준 증빙서류 : 관련분야 학위증명서, 자격증 또는 근무경력 증명서) 각 1부. ⑮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1부.				

자르는 선

제 회		①응시번호	⑩ 사 진 (3.5cm×4.5cm)
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응시표			
③성 명	(한자)		
④주민등록번호			
이 사람은 년도 제 회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응시자임을 확인합니다. 년 월 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장(이사장) 직인			

응시원서 작성방법

- ① 응시번호: 응시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.
- ② 응시등급: 해당하는 종목에 '√' 표시를 합니다.
- ③ 성 명: 한글로 적되, 한자란은 한자를 적어 넣으시기 바랍니다.
- ④ 주민등록번호: 숫자로 명확하게 기재합니다.
- ⑤ 주 소: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기재하되, 상세 주소(동·호수)까지 기재해야 합니다.
- ⑥ 연락처: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.
- ⑦ 최종학력: 「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2에 관련된 전공분야를 작성합니다.
- ⑧ 직업: 회사원, 공무원, 학생, 농업, 자영업, 무직, 그 밖의 직업 등을 기재합니다.
- ⑨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부여 받은 교육이수 증명서를 참고하여 기재합니다.
- ⑩ 사진: 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찍은 여권용 사진(3.5cm×4.5cm)을 응시원서 및 응시표에 각각 붙여야 합니다.
- ⑪ 필기시험 면제 여부 및 사유 : 필기시험 면제 대상자는 해당되는 사유에 '√' 표시를 합니다.
 - 1) 전 회 시험의 1차 시험 합격자: 「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
- ⑫ 시험 응시 년도, 회차, 응시원서 제출 날짜, 이름, 서명(또는 날인)을 정확히 기재합니다.
- ⑬ 양성기관에서 교육이수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합니다.
- ⑭ 「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2에 관련된 학위 증명서, 자격증 또는 근무경력 증명서를 제출합니다.
- ⑮ 신청인의 기본사항 증명을 위해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자르는 선

응시자 주의사항

1.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·위조·오기·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.
2. 수험자는 시험 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(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습니다), 시험 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, 수험표, 필기구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해야 합니다.
3. 결시 또는 기권하거나 답안카드(답안지) 제출에 불응한 수험자는 해당 교시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4.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(답안지) 제출 지시에 불응한 경우 해당 은 무효로 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5. 수험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, 부정한 행위를 한 수험자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.
6. 개인용 손목시계를 준비하여 시험시간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.(휴대전화 등 데이터 저장이 가능한 전자기기는 사용이 불가합니다)
7.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[휴대용 전화기, 휴대용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(PMP) 등 기타 사용 불가 기기는 수험자 유의사항 참조]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, 금속(전파)탐지기 수색을 통해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.
8. 그 밖에 시험일정, 운영, 기타 유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자격 농촌진흥청 홈페이지(www.rda.go.kr)의 시행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라며,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자의 책임입니다.

제 호

치유농업사 자격증

사 진

(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
배경 없이 촬영된
상반신 컬러사진)
2.5cm × 3cm

1. 성 명:
2. 생 년 월 일:
3. 자 격 등 급: 치유농업사 급

「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농 촌 진 흥 청 장

직인

치유농업사 자격증 발급대장

[illegible]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치유농업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일자	처리기간 30일
신청인	성 명	(한글) (한자)	생년월일
	주 소	(전화번호:)	
신청내용	자격등급	치유농업사 급	
	자격증 발급번호	※ 자격증을 분실하여 모르는 경우는 작성하지 않습니다.	
	발급연월일	※ 자격증을 분실하여 모르는 경우는 작성하지 않습니다.	
	치유농업사 양성기관		
	재발급 사유	훼손 분실	

「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치유농업사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농촌진흥청장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치유농업사 자격증(자격증을 분실한 경우는 제외합니다) 1부. 2.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1부. 3. 본인사진 1부.	수수료 없 음
-------------	--	------------

비고: "자격증 발급번호"란 최초로 부여된 자격증의 발급번호를 말합니다.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30일
신청인	기관·단체명	대표자
	주 소 (인터넷주소 포함) (전화번호:)	
신청내용	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명칭	
	개설예정일	전화번호
	주 소	

「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농촌진흥청장·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

귀하

첨부서류	1. 운영계획서(교육과정 및 교육내용, 운영경비 조달계획 포함) 2.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현황 3. 교수요원의 확보현황 4. 치유농업 관련 교육·연구 실적(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----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제 호

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서

1. 명 칭:

2. 대표자:

3. 소재지:

「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농촌진흥청장.
특별시장·광역시장.
특별자치시장·도지사.
특별자치도지사

직인

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

접수일자	지정번호	발급일자	신 청 인			사무소 소재지	전화번호
			기관명	대표자 성명	주 소		

297mm×210mm[백상지 80g/㎡]

제 호

치유농업사 양성과정 교육이수 증명서

성명(한글) :

생년월일 :

주 소 :

교육과정	치유농업사 제(1, 2)급		
이수기간	년 월 일 ~ 년 월 일		
교과목	교육 이수시간		계(시간)
	이론	실습	
총 이수시간			

위 사람은 「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6항에 따라 치유농업사 양성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양성기관의장

직인